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6

제출년월일 : 2017. 7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헴프체험시설 관리위탁 기간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, 위탁계약 기간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을 한글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 함. (안 제4조제2항, 안 제11조)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나. 관리위탁기간 갱신 사항을 명확히 함.(안 제4조제3항)

- 관리수탁자 ⇒ 한 차례만 관리수탁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 : 제출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규제사항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: 원안동의

5)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헴프전시체험실(이하 “전시체험실”이라 한다)”을 “헴프전시체험실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전시체험실”을 “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(이하 “전시체험실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군수”를 “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6조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관리수탁자”를 “한 차례만 관리수탁자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삭제하고,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전시체험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, 해당 관리위탁기간은 계속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(이하 “전시체험실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헴프전시체험실----------. ----------
제2조(위치) 전시체험실은 평창군 방림면 고원로 1247 일원에 둔다.	제2조(위치)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(이하 “전시체험실”이라 한다)--.
제4조(관리위탁) ①군수는 전시체험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②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6조, 제7조, 제10조를 준용한다. ③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	제4조(관리위탁) ①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----------. ②---------- -----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----------. ③----------. ---------- ---- 한 차례만 관리수탁자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	----------.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11조(준용) ----------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----.

<붙임 1>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
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,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<붙임 2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
연락처	(033) 330-2540